

북한사회제도의 법적구조분석

— 사회보장입법을 중심으로 —



1972. 5

박길준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의미	3
제 2 절 북한에 있어서의 범규범과 법현실	6
제 2 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11
제 1 절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체계	11
제 2 절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체계	12
제 3 절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 정책	13
제 3 장 북한의 사회보험제도	15
제 1 절 서 언	15
제 2 절 사회보험개설	15
제 3 절 사회보험의 종류	17
제 4 절 보험금부의 청구	25
제 5 절 사회보험제도의 실태	26
제 4 장 북한의 공중위생제도	28
제 1 절 서 언	28
제 2 절 병원의 공공적 운영	29
제 3 절 요양소·정양소	32
제 4 절 탁아소	33
제 5 절 공중위생제도의 실태	33
제 5 장 북한의 사회보장주변제도	35
제 1 절 서 언	35

제 2 절 노동복지	35
제 3 절 의무교육	37
제 4 절 주택정책	37
제 6 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39
제 1 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39
제 2 절 남북한 비교	45
제 7 장 결론	48
(주 해설)	50

본 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공신의견이 아님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의미

자본주의는 가격의 자동조절작용에 의한 경제질서의 자연조화를 예정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하나 이러한 낙관적 경제관은 자본주의의 진전이 내부적으로 산출하는 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붕괴되었다. 자유경쟁은 독점으로 발전하고 생산의 무절제한 증대는 경기변동을 격화하고 생산과 분배의 괴리는 소득불균형을 심화하여 이에 따라 만성적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미 이에 대한 자율적 회복력을 상실한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광범한 국가간섭에 의한 경제의 유도가 자본주의 체제 존립의 제도적 조건이 되었으며 사회보장은 결국 자본주의의 제도적 약점을 보정하여 그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의식적 조치의 일부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빈곤 및 실업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19세기적 생활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하는데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서 사회보험을 통하여 빈곤의 사전 예방에 치중하고, 일단 발생한 빈곤을 공적부조(公的扶助)에 의하여 구제함으로서 보완하며 주변제도로서 사회복지정책 공중위생정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의 중심적 기능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확보시킴으로서 국민생활기반의 약체를 보강하는데에 있으며 결국 생활

의 기초적 부분의 사회화를 피하는 것으로서 그 정책적 효과로서는 빈곤의 현재화(顯在化)를 방지함으로써 생활불안의 증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정치적 효과와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소하여지는 사회적 소비력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경제활동을 안정시키는 경제적 효과의 양 측면이 있다.

긴박화한 사회불안의 저지와 협애화한 시장문제의 타개라는 이중의 과제를 사회보장에 담보시키는 정책의 기반은 결국 자본주의질서의 순조로운 유지 발전을 예정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생활불안을 일종의 부조정현상(不調整現象)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유지 발전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본주의의 자연적 소멸을 예언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한다. 노동자는 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자본가를 위하여 노동하나, 사회주의하에 있어서는 사회의 소유요 결국 자기의 소유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동시에 사회를 위하여 노동한다고 말하여진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생산의 객관적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의 전 구성원의 물질적 복지와 문화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고 주장된다.

그 경제제도 자체가 사회의 전 구성원의 물질적 복지와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이 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인데 반하여, 사회주의

하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의 실시 및 그 충실도가 경제제도의 근원적 체질에서부터 현출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잉여노동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파악되어 일부는 생산확대를 위한 시설확대자금으로 나머지는 「사회적 소비자금」 즉 「전체로서의 사회주의사회의 필요를 위한 교육·보건·사회보장·예술 등등의 분야」에 충당된다. 결국 사회보장은 잉여노동(사회를 위한 노동)의 일부로서, 사회주의생산의 산물로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소련헌법 제 120조는 「소비에트연방의 시민은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에, 이에 대한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¹⁾ 사회보험·무료의료의 제공 요양지의 공여 등에 의하여 보장될 사회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이 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서, 사회주의하에 있어서는 그 경제제도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의 충실도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 있어서보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더욱 강조됨은 이론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 통유성(通有性)인 전체주의 체제에 의하여 강화하여 오던 사회주의 생산의 성장율이 바로 그 전체주의체제의 약점에 의하여 둔화되자, 생산발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업의 자주성 확대를 통한 「이윤」의 도입과 「노동

에 대응한 분배」원칙의 채택과 함께 사회보장부면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중점도 생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동능력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결국 공중위생에 치중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그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이 사회주의에 있어서와 자본주의에 있어서 각기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에 대한 파악이 선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잉여노동가치가 일단 자본가의 이윤으로 귀착되고 그 일부가 국가에 대한 납세와 사회보험료로 징수되어 결국 그 상당 금액이 사회보장비용으로 현출되는데 반하여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잉여노동가치 자체가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파악되어 그 일부가 사회보장비용으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도와 충실도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가져온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진정한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에 대한 신봉자라면, 자본주의 체제존립의 조건으로서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를 두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한 운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 2 절 북한에 있어서의 범규범과 법현실

제도의 완비가 그 실효적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제도는 이미 하나의 장식, 하나의 형해(形)에 불과하게 된다 할 것이다. 모든 후진국가가 장식적제도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유혹을

느낀다고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은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그 실효성 여하에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나서고, 북괴의 전인민에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천리마」적 강행을 요구하는 한 사회진 구성원의 물질적 복지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민들에게 개인 생활의 절대적 희생을 강요할 명분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다. 다음, 북한은 이른바 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프로파간다」를 그 주요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바 남북한 대비를 통하여 그를 스스로의 우월을 선전하기 위하여 모든 근대국가의 한 자격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할 필요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둘이다.

이렇게 북한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에 대한 필요가 강하면 강할 수록 명분과 선전을 위한 장식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제도는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제도 자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제도의 운영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우선 북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법규범과 법현실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면, 실사 사회보장의 부면에서 완벽한 법제를 정비하였

다 할지라도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실제적 적용에 있어 자의성이 나타날 것인 바, 막대한 국가재정을 일반국민소득으로 분배할 것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속성이라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력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그들 법체계의 발전을 시대적 목적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분류한다. 즉 (i) 평화민주적 건설단계 (1945 ~ 1950) (ii) 조국해방전쟁단계 (1950 ~ 1953) (iii) 사회주의건설과 국민경제의 회복단계 (1953 ~ 현재)의 세 단계이다. (2)

소위 평화민주적 건설단계와 조국해방전쟁단계의 특성은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의 잠정적 단계라는 점에 있다. 평화민주적 건설단계에 있어서의 법체계는 김일성이 1946년 3월 23일에 발표한 소위 20개정강과⁽³⁾이에 근거한 소위 민주개혁법률⁽⁴⁾ 및 1948년 9월 9일에 공포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으로 대표되며 그 특성은 역시 「장식적」이라는데 있다. 조국해방전쟁단계에서의 북한법은, 소위 전시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의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증가시키는데 봉사하였다고 한다. (5)

북한에 있어서의 법체정비는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상응하여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북한의 소위 인민경제개발계획은, 1963년부터 약 1년간의 준비에 뒤이어 1954년~1956년의 3개년계획, 1957년~1961년의 5

개년계획, 1961년~1967년의 7개년계획(1970년까지 3년연장), 1971년~1976년의 6개년계획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기간중 1956년을 전후하여, 이후의 법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당시 소련에서의 스탈린격하운동과 파장을 같이 하여, 북한의 일부 고위사법간부들이, 판사의 독립 및 사회주의준법성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노동당이 법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여 왔다고 하며 당자체를 비난하며 들고 일어선 것이었다.⁽⁶⁾ 그러나 사회주의 법치국가원리를 주장한 이들은 「사법부내부에 잠입한 반당 종파분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고 차례로 숙청을 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한에 있어서 「법에 대한 당의 우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5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사법경찰일군대회」에서

“...위에서 내가 법은 정치의 한 개의 표현형식이라고 말했읍니다. 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알 수도 없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읍니다. 우리의 법은 우리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법 자체가 당의 정책을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정확히 실현한다는 것은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당의 영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연설함으로써 북한의 사법정책을 결국 「법에 대한 당의 우위」로 확립하였던 것이다.⁽⁷⁾ 북한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정치

현상이 김일성에 대한 철저한 개인숭배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의 우위는 곧 김일성 자신의 우위를 의미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 이후 북한에서는 이미 법규범은 없고 법현실만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주의적」의미에서의 법치주의도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법에 대한 당-곧 김일성 자신-의 우의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회보장제도의 연구에 있어서도 법제도여하보다 법현실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췌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법제에 관한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차제인지라 사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서 본고의 한계를 자인하는 바이다.

제 2 장 · 북한 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제 1 절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체계

사회보장제도는 ①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빈곤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② 공적부조(公的扶助)제도를 통한 빈곤의 구제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며 ③ 그 주변계도로서 사회복지 공공위생제도 곧 일반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유형에 의하여 구축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전각출에 의하여 급부수령권을 의제(制)하는 것으로서 각출과 사회보험급부의 총체적대가관계를 보험기술의 매개에 의하여 유지하는 것이고, 공적부조제도는 그 재원을 공공자금에 의뢰하고 일정한 기준의 빈곤도의 인정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적인 구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바 이때의 보호기준은 공인의 최저생활기준의 구체적 표시를 의미하게 되므로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저변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공공위생의 일반복지서비스는 사전각출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고 요보호성(要保護性)의 인정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제도와의 다르나 결국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중간적 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양제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룬다.

한편 이러한 사회보장의 체계도(諸制度)는 그 제도자체뿐만 아니라 ① 최저임금제 ② 노동복지 ③ 의무교육제도 ④ 주택정책 등과도 관련을 이루는 바 이들은 문자 그대로 사회보장의 주변문

제라고 할 것이다.

제 2 절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체제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체제는 위의 일반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북한의 사회계층별 구성을 보면 1965년말 현재 노동자 41%, 사무원 16.5%, 농업협동조합원 40.8%, 기타조합원 1.7%로 구성되는 바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인민생활을 전체주의적 생산 방위체제로 집적시키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는 불구폐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의에 의한 실업은 물론 자발적 실업조차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상의 특징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제도에서 단절된 층에 대한 빈곤의 구제를 그 독자적 영역으로 삼고 있다고 할 공적부조제도는 그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으로서 공적부조제도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보완적 기능으로 시종하는 공적부조제도의 존재의의는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하여 북한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그 중점이 놓여 있고, 이와 유기적 관련하에 있는 일반복지서비스 특히 공중위생제도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중위생으로 집약된다 할 것이다.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법으로서 1964.12.19.에 제정 공포한 사회보험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모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의무적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보험의 종류를 (1) 보조금 (2) 연금 (年恤金) (3) 의료상 방조 (醫療上補助)로 나누고 있다.(9)

(2) 공중위생

병원·진료소·보건소·산원 (産院) 및 탁아소와 휴양소·요양소의 공공적운영이 내증을 이룬다.

(3) 주변제도로서 8시간노동제,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 3 절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부의 확충은 곧 확대재생산에 투하될 자본의 소비를 의미하므로, 고도의 사회경제력의 성장에 일응 장애가 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체제여하를 막론하고 공통된 감각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한에서 그들의 이른바 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사회보험법의 제정과 그 실시를 서두르게 된 동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당시 기왕의 일인들의 주지와 계몽에 의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북한인민들에게 밝은 군대를 앞세우고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내세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합리성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선전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현재에 있어서의 그들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이른바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명분보다도 경제발전의 중요저변으로서의 노동력의 보존과 그 질적 확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북한에 있어서 현재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을 위한 전인민의 투쟁 그 자체에 있고, 결코 사회보장을 통한 전인민의 물질적생활의 향수에 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정한 과정에 있어서의 순위도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이 1970.11.2.의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에서 중공업부문에서는 어떠하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어떠하며 농업부문에서는 어떠하다는 등의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의 전변(轉變)을 이야기하고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의 공고화를 부르짖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의 수립을 강조하고 나서야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 차이의 극복과 탁아소수용시설의 확대 병원의 증설 등을 언급하고 있음은⁽¹⁰⁾ 결국 사회보험정책의 열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언급된 사회보장관계부면에 있어서도 오로지 노동능력의 보존과 관련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제 3 장 북한의 사회보험제도

제 1 절 서 언

북한에서는 그들의 소위 헌법제정전에 이른바 민주개혁법률을 공포하였던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1946.6.24.에 공포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인바 이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1946.12.19.에 「사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다.⁽¹⁾ 사회보험제도는 1948.9.8.에 제정 공포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 17 조에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이 노쇠·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거법규가 보장되었다.

사회보험법은 전 14장 173조문과 부칙 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사회보험 개설

(1)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사무는 피보험자의 직장소재의도 및 시군인민위원회가

집행하되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동법 6조)

(2) 피보험자

① 의무적 가입

모든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분의 노동자 사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적용시키며 따라서 모든 노동자 사무원은 의무적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동법 15조,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제18조)

또 피보험자중 보험료를 만 7개월이상 계속적으로 납부한 자만이 사회보험법에서 정하는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험법 16조)

(2) 피부양자에의 적용확장

사회보험급부는 경우에 따라 피보험자 외에 그 피부양자에도 지급되는 바 이때의 피부양자라 함은 (i) 피보험자의 자녀·형제·자매로서 만 16세 미만자 (ii) 연령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양친·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iii) 피보험자의 양친 및 배우자로서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 만 50세 이상에 달한 자 (iv) 피보험자의 처를 말한다. (동법 1조비고)

(3) 보험자금

사회보험행정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출한다.

(동법 13조)

(4) 보험료

고용주(국가 소비조합 국영기업소 사무소 및 단체 등을 포함)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보수의 총액에 사회보험료

수납법 (1947.3.24. 제정) 에 정하는 납부비율에 의한 금액을 피보험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 또는 보수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동법 14조) . 고용주는 피보험자에게 지불할 임금으로부터 보험료를 공제하여 고용주분과 함께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동법 19조)

제 3 절 사회보험의 종류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험은 그 급부의 종류에 따라서 ① 보조금 ② 연금 ③ 의료상 방조로 나눌 수 있다.

I. 보조금

보조금은 일시금으로서 ①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조금 ② 해산보조금 ③ 장례보조금 ④ 실업보조금이 있다.

(1) 노동능력 상실보조금

① 사유

피보험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사의 지시로 휴업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다.

② 보조금의 비율

이때의 보조금은 휴업당시의 임금 (최근 1개월간의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i) 1급 (모범노동자 모범사무원 및 기술자) 의 경우 75% , (ii) 2급 (기관수 및 광산지하노동자) 의 경우 근속연한에 따라 65 ~ 75% (iii) 3급 (광산일반 노동자 기간산업의 노동

노동자, 교원, 예술인)의 경우 근속연한에 따라 60 ~ 75%,
(Ⅲ) 4급(사무원 및 기타의 노동자)의 경우 근속연한에 따라
60 ~ 75%, (Ⅴ) 5급(비직업동맹원)의 경우 50 ~ 60%의 비
율에 의하여 정한다. (동법 53조)

(3) 보조금지급기간

(1) 직무상의 질병·부상이거나 보건국이 정하는 특별질병
인 경우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불구폐질자로 인정된 날 또는 회복일
까지 (Ⅱ) 직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인 경우 결핵성질환은 1년
기타는 3개월을 상한으로 하여 회복일까지의 기간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한편 의료상 방조 내지 사회보험의의 지시에 의하여 휴양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동법 55 ~ 58조)

(2) 해산보조금

(1) 사 유

일정기간이상 근속한 피보험자가 임신 또는 해산으로 휴
가한 때이다. 최소한의 근속기간은 기술자 모범노동자·모범사무원
은 7개월 이하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고 경한 노동으로 넘어간
자는 8개월, 기타의 직업동맹원은 10개월, 비직업동맹원은 12개
월이다. (동법 59조)

(2) 보조금의 비율

임신 또는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은 최근 6개
월간의 평균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 (동법 60조)

피보험자가 해산하였을 때는 보충적 보조금으로서 일정금액의 해
산비를 지급한다. (동법 63조)

(3) 보조금 지급기간

산전휴가(産前休暇)의 보조금은 42일분, 산후휴가의 보조금은 35일분을 지급하되 실지휴가일이 35일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분을 공제한다. (동법 61조)

(3) 장례보조금

(1) 피보험자사망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사회보험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거주지가 시(市)일 때는 800원, 기타일 때는 500원의 장례보조금(만 10세 이상자 기준)을 장례를 치른 가정에 대하여 지급하며, 한편 직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장례보조금을 2,000원으로 한다.

(동법 70조)

(2) 피부양자 사망의 경우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사망자의 거주지가 시(市)일 경우는 500원, 기타일 경우는 300원의 장례보조금(만 10세 이상 기준)을 지급한다. (동법 71조)

(4) 실업보조금

(1) 사유

해고당한 피보험자가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계극빈하여 이를 부양할 자도 없는 경우이다.

이때의 해고는, 자발적 사직, 노동규율의 위반 범죄 또는 징계상의 면직 기타 자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동법 75조)

보조금의 지급은 이러한 사유있는 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인
민위원회에서 실업보조금지급의 필요를 인정한 자에 한한다.

(동법 76조)

(2) 보조금의 비율 및 지급기간

실업보조금은 당해지방의 표준평균임금의 20%를 도인민
위원회에서 실업자로 인정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지급한
다. (동법 77조)

Ⅱ. 연 금

연 금에는 ① 폐질연 금 ② 유가족 연 금 ③ 양로연 금
이 있다.

(1) 폐질연 금 (廢疾年恤金)

① 사 유

피보험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부터 불구
폐질자로 인정되었을 경우이다. (동법 80조)

② 기 간

기간을 일률적으로 폐질된 다음날부터 사망 혹은 회복일
까지이며, 폐질연 금은 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동법 80조)

③ 폐질연 금의 비율

불구폐질의 성질, 정도에 따라 제1류는 노동능력을 완전
히 상실하여 타인의 간호를 요하는 자, 제2류는 일반적인 보통노
동능력을 상실한 자, 제3류는 자기 직업에서 계속적으로 노동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불규칙노동 또는 노동시간단축노동 또는 자격
저하된 타직업노동은 할 수 있는 자로 구별한다. (동법 81조)

불구폐질의 원인이 직무집행상의 질병, 부상인 때에는 (i) 제 1류
폐질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평균임금년액의 90%, (ii) 제 2류
폐질자의 경우 65%, (iii) 제 3류 폐질자의 경우 35%를 한도로
폐질연금을 지급하고 (동법 82조) 불구폐질의 원인이 직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구폐질의 정도에 따라
(i) 지하노동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모범노동자·모범사무
원·기술자는 최저 25%에서 최고 60% (ii) 기간산업에 종사하
는 노동자는 최저 24%에서 최고 58% (iii) 기타의 노동자·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현장의 사무원·교원·예술인은 최저 23%에
서 최고 57% (iv) 직접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원도 최저 23
%에서 최고 57%의 비율에 의하되, 근무연한수에 따라 그 비율
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동법 85조)

(4) 불구폐질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폐질연금이
5년분에 상당한 금액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폐질일
일시금으로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동법 88조)

(2) 유가족연금 (遺家族年恤金)

유가족연금이라 하나, 기실 (其實) 유가족연금과 유가
족부양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유가족연금

① 사유

피보험자가 직무집행상 사망하거나, 직무집행상의 질병·

부상으로 의료상 방조를 받던 자가 사망한 때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동법 91, 93조)

(2) 유가족의 범위 및 기간

피보험자의 만 16세 미만 자녀·형제자매는 만 16세에 달할 때까지, 불구폐질된 자녀·형제자매·양친·배우자는 불구폐질의 전기간 양친 및 처로서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 만 50세 이상의 자는 종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피보호자가 만 14세에 달하기 전일까지이다. (동법 92조)

(3) 유가족연금의 비율

피보험자의 근속연한수를 불문하고 유가족 1명인 경우 최근 1년간의 평균 임금년액(年額)의 40%, 2명인 경우 60%, 3명이상인 경우 90%를 사망일일부터 월할계산(月割計算)하여 매월 지급한다. (동법 93조)

2) 유가족부조료

(1) 사유

근속연한 3년 이상의 피보험자가 직무와 관계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 유가족에게 유가족부조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가족의 범위는 유가족연금에 있어서와 같다.

(2) 유가족부조금의 비율

피보험자가 지하노동 또는 유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보범노동자·모범사무원·기술자인 때는 유가족의 수가 1명, 2명, 3명이상인 각 경우에 있어서 전노동경력기간의 평균임금년액

(年額)의 각 85%, 110%, 135%를 지급하고,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때에는 각 80%, 105%, 130%를 지급하고, 기타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70%를 지급하며 사무원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60% 지급한다.

근속연한수에 따라 앞에 말한 비율은 일정한 비율로 가산된다.

(동법 94조)

(3) 양로연 금(養老年恤金)

일정한 노동경력(동법 98조 규정)을 가진 자가 일정한 연령(동조 규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비율(동법 99조 규정)에 의한 양로연 금을 종신 지급한다.⁽¹²⁾

Ⅲ 의료상 방조

피보험자 및 그 피보험자의 질병·부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료상 방조를 한다.

(1) 피보험자의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질병·부상의 경우

① 의료상 방조의 범위

진찰료·약재료·처치 및 수술료·입원료·요양소·휴양소 비용을 무료로 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동법 107, 113, 121조)

해산으로 인하여 산원 또는 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및 산원·병원 이외에서 해산하고 후발적으로 진료를 요할 때에는 무료로 의료를 제공한다. (동법 114조)

② 의료상 방조의 기간

의료상 방조는 3개월을 한도로 하나, 결핵성 질환은 12

개월을 한도로 한다. (동법 제119조)

(2) 피보험자의 직무집행상의 질병·부상의 경우

① 의료상방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외에 1회에 한하는 의치·의수·의족·의안·안경등을 무료로 지급하고 전지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의 비용을 무료로 한다. (동법 108, 112조)

② 의료상방조의 기간

이 경우에는 회복할 때까지 의료상방조를 한다. (동법 120조)

(3)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의 경우

결핵성 질환 및 정신병인 경우에는 그 의료비의 30%, 일반병 및 요양소·휴양소에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40%를 징수한다.

(4) 의료상방조의 절차

사회보험의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료를 했을 때에는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의료방조비를 매월 사회보험기관에 청구한다. (동법 123조)

(5) 보험의

사회보험의사·사회보험약제사·사회보험조산원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원 가운데서 보건국장이 지정하며 의사등이 그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지 못한다. (동법 109조 110조)

제 4 절 보험금부의 청구

(1) 보험금부청구의 장애사유

① 고의등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일체의 보험금부를 지급하지 않으며(동법 43조),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개인적 난투, 니취(泥醉) 또는 우심(尤甚)한 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고의로 위험발생에 관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상지휘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서는 그 보험금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44조)

② 수용 또는 구금기간중의 발생의 경우 피보험자가 (i) 경비대 등에 입소하였거나 (ii) 6개월 이상 북한이외의 지역으로 출장하였거나 (iii) 교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수용되었거나 (iv) 인민교화소 기타에 법령상 구금되었거나 (v) 범죄로 인하여 도망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보험금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동법 42조)

(2)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의 종료일 부터 1년 이내에, 연금을 받을 권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발생일 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각각 시효로서 소멸한다.(동법 31조, 32조)

(3) 보험금부청구의 특징

- ① 보험금부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법 33조)
- ② 보험금부를 받을 권리는 차압하지 못하며 (동법 34조), 보험금부로서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세금 기타의 공과를 부과하지 못한다. (동법 8조)

(4) 보험금부결정에 대한 이의

① 보험금부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1차 사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차 사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민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동법 137조) 심사의 청구제소는 그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법 139조)

② 사회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직업동맹대표 2인 내지 3인, 노동행정원 1인 내지 3인, 고용주대표 2인 내지 3인 보험의 1인, 위생감독의원 (医員) 1인, 기술감독원 1인, 정당사회단체대표 1인 내지 3인으로 한다. (동법 148조).

제 5 절 사회보험제도의 실태

북한에 있어서 국가보험료수입은, 1945년을 100으로 볼 때 1964년 현재 2,409를 나타내고 있는 바, 결국 약 24배증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일층 사회보험제도가 사장된 것이

아니라 계속 실효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추측되기는 하나 단순한 비율만으로서의 실제적 현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회보험급부산정기준의 평균 임금인 바, 평균임금이 어떠한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66년 8월 현재의 가구당수입은 세대주(6급 공원) 월급 43원과 부인(3급 공원) 30원 합계 73원이고⁽¹⁴⁾ 한편 1970년 9월 1일부터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임금을 평균 31.5%인상함으로서 월평균 1인당 70원으로 되었는데⁽¹⁵⁾ 북한의 1원이 남한의 약 120원에 해당함을 미루어 보면 노동자 사무원의 월평균 1인당 임금은 약 8,400원 정도에 머무르는 열세(劣勢)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상 현실에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수치상의 대비보다도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파행성(行性)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능력상실 불구폐질을 사회보험의가 판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든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매진에 대하여 일조(一助)가 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반환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뿐만 아니라 소위 반동(反動)세력에 대하여 노동의 기회를 박탈 제한함으로써 결국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차단되게 하는 적용상의 불평등의 염려가 있다는 점에 오히려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 4 장 북한의 공중위생제도

제 1 절 서 언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 공중위생의 일반복지 세 부면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이나, 급부의 내용으로 보면 결국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 문화수준의 확보를 위하여는 생활수준의 소득보장과 의료의무상보장의 양 요소가 필수 불가결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공중위생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사회보험제도의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공중위생제도의 필요는 이러한 일반적 의미외에,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이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노동능력의 보존 복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중위생제도의 새로운 차원에서 중점을 둠으로써 더욱 커져가고 있음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북한에 있어서도 소위 그 정권수립직후부터 사회보험과 아울러 공중위생에 관심을 가져 역시 그들의 이른바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료기관의 공공적운명을 위한 제규정⁽¹⁶⁾ 의사의 직무감독에 관한 규정⁽¹⁷⁾ 치료비에 관한 규정⁽¹⁸⁾ 요양·휴양소에 관한 규정⁽¹⁹⁾ 탁아소에 관한 규정⁽²⁰⁾등을 서둘러 제정공포 하였다.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은 체제여하를 불문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이나 북한의

특별한 제도로서의 탁아소의 운영은 오히려 그들의 체제자 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탁아소는 주부근로자를 위하여 그 유아를 맡아 보육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제도는 그들의 이른바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는⁽²¹⁾ 유아보호정책에 기인한다기 보다도 이른바 「공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은 조선공민의 영예다」⁽²²⁾라는 사회주의적 근로의 의무 내지 의무근로제하에서, 부녀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민에게 노동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기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공중위생제도는 일응 병원 요양소 정양소 탁아소로 나누고 고찰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제 2 절 병원의 공공적 운영

(1) 병원의 운영 및 규모

1947.7.10.의 「병원 암블라토리(의원) 및 폴리클리닉(진료소) 규정」에 의하면 병원·암블라토리·폴리클리닉은 보건국 및 도시군면인민위원회나 개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이고⁽²³⁾ 1947.8.8.의 「간이 암블라토리(진료소) 및 간이 산원 규정」에 의하면 간이 암블라토리 및 간이산원은 군면리인민위원회 또는 개인이 개설 경영하고⁽²⁴⁾ 1947.7.14.의 디스판셀 규정에 의하면 디스판셀(보건소)은 각 인민위원회가 경영한다고⁽²⁵⁾ 되어 있다. 결국 병원·의원·진료소의 개인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1948.9.8. 제정당시

의 이른바 헌법이 5정보이하의 토지의 개인소유 및 중소기업 상업의 개인경영을 인정하여⁽²⁶⁾ 타협적 방식을 취한 것과 그 제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57년 이후의 이른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나타난 천리마운동을 계기로 모든 개인농민 개인수공업자 개인기업가 상인은 농업협동조합원 노동자 사무원으로 흡수되어 자취를 감추고⁽²⁷⁾ 이와함께 개인경영의 의료기관도 공공운영 기관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보건시설을 살펴보면 병원수에 있어서 1946년 85개, 1960년 447개, 1963년 535개이고 침대를 가지지 않은 외래치료기관(진료소 등)수에 있어서 1946년 93개, 1960년 4,364개, 1963년 4,694개인 바 1964년에는 진료소들의 병원화계획과 함께 양자를 합하여 병원 5,321개를 나타내고 있다. 침대수에 있어서는 1946년 2,031개, 1960년 32,698개 1964년 51,068개를 나타내고 있다.⁽²⁸⁾

한편 의사 및 준의사수를 보면, 1946년 1,009명, 1960년 11,919명, 1964년 22,706명으로서, 1946년 당시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1.1명, 1960년 11.0명, 1964년 현재 19.0명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외국의 인구 1만명당 의사(치과의사포함)수를 보면 소련 24.0, 서독 21.1, 미국 19.6, 일본 14.7, 맨막 19.5이다.⁽³⁰⁾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총화보고에서 앞으로의 보건정책에 대하여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을 늘이며 의약품 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 사업을

더욱 개선할 것과 특히 군병원들을 잘 가꾸고 농촌여성들을 위한 산원들을 강화하며 농촌리들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원을 꾸며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겠다고 말하였다. (31)

북괴 제 1부수상 김일손, 이를 받아 예방치료집단수를 1만개 더 늘이며 의사 및 준의사를 훨씬 늘여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전문과적 의료방조를 줄 수 있도록 전문병원과 전문병동을 더 많이 꾸려야 할 것이고 특히 군병원들에 전문과들을 내오고 구급차들을 더 많이 보장하여 주어 왕진치료를 강화하여 농촌여성들을 위한 산원을 많이 내오고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리마다 아동병원을 꾸려 농촌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겠다고 말하였다. (32)

결국 그들의 경제발전 6개년(1971~1976) 계획기간중의 보건정책상의 목표를 요약하면 ① 의료기관 및 의사의 증강 ② 군병원의 강화 ③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 아동병원 설치, 농촌산원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상치료제

1947.6.20의 치료비규칙은 주사료, 일정한 처치료, 입원조산료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찰료·검사료·약값 기타의 처치료·입원료는 이를 징수하는 바 그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33)

유상치료의 원칙은 1946.12.19.의 사회보험법에서도 나타나는바 의료상방조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도 앞서 말한 의료상방조 외에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부담을 인정하며 피부양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컨대 일반병의 경우 의료비의 4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

그러나 이른바 사회주의체제의 강화에 따라 1961년 이전부터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던 바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간에서의 치료는 무상으로 되어 공중위생부면에서의 사회보장은 강화되었다.(35)

제 3 절 요양소 · 정양소

요양소 · 정양소에 있어서도 무상치료제의 원칙이 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보험법상의 의료상방조를 위한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1947년에 벌써 일본국가 일본인단체 일본인 및 이른바 민족반역자의 소유였던 휴양소 · 별장 온천과 약수시설, 유람시설 산장 기타 요양 · 휴양시설을 국유화하여 사회보험요양소 사회보험휴양소, 사회보험유람시설로 하고, 그 외에 이미 국유화한 공장 광산 철도 운수 통신 및 각급 기업소에 속하여 있던 시설들을 사회보험 요양시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36)

휴양소 및 정양소의 현황을 보면 그 수에 있어서 1953년에 30개이던 것이 1960년 284개로, 침대수에 있어서 2625개에서 22,313개로 휴양자 및 정양자수에 있어서 35,610명에서 358,580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37)

김일은 제 4차 당대회 보고 및 제 5차 당대회보고에서 각각 요양소의 신설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바,⁽³⁸⁾ 요양소에 대한 관심은 공중위생일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재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제 4 절 탁 아 소

1947.6.13. 북한에서는 「탁아소규칙」을 보건국명령(제5호)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탁아소의 현황을 보면 그 수는 1964년 현재 787,504 석이다.⁽³⁹⁾

1947년의 탁아소규칙은 「탁아소에는 소관인 민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탁아식사에 대한 설비를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그 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⁴⁰⁾ 1966년 8월 현재 가구당 수입이 73원이고 유아 1인인 가구에서(세대수 월급 43원, 주부월급 30원) 탁아소납부금으로 1.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탁아소비율이 가구당수입의 근 2%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1967년부터 시작된 전반적 9년제기술 의무교육제에 따라 탁아소비용이 무상으로 되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길이 없다.⁽⁴²⁾

제 5 절 공중위생제도의 실태

공중위생제도의 중심으로서 무상치료제는 사회보장부면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 조치이다. 다만 무상치료제의 실효적 운영은 고도로 숙련된 의사의 확보, 약재의 충분한 질적·양적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북한이 상당한 수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아직 의사의 절대수 및 그 숙련도와 약제의 확충의 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은 앞서 인용한 김일성 및 김일의 보고문에서도 규지할 수 있다 하겠다.

제 5 장 북한의 사회보장주변제도

제 1 절 서 언

사회보장주변제도로써, 북한에 있어서의 노동복지·의무교육·주택정책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여하는 그 제도자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제 주변제도로 여하히 보완되느냐의 점이 제도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노 동 복 지

북한에서는 1946.6.24. 소위 민주개혁법률의 일환으로서,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정·공포하였던 바⁽⁴³⁾ 그 내용은 우리 근로기준법과 대동소이하다. 1948.9.8.의 소위 북한 헌법은 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노동보수,⁽⁴⁴⁾ ②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8시간노동일 및 유급휴가제를⁽⁴⁵⁾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8시간노동일을 보장하고, 유해노동·지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7시간으로 하고, 소년노동은 6시간으로 하며, 14세미만자의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등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8시간 노동일의 원칙은 계속 여러가지 명분 아

래 무시당하여 왔다. 예컨대 1957 ~ 1961년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1958.9. 노동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이후 이른바 천리마운동이 전개되었던 바, 그 결과 노동시간은 1일 14시간이상 연장되게 되었고,⁽⁴⁶⁾ 사람들은 「동물처럼」 일할 것이 강요되었다.⁽⁴⁷⁾

이러한 8시간 노동일의 근본적 파기는 결국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매진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전체주의사회의 치명적 폐단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에 있어서는 480분(8시간)노동일이 적어도 노동자 사무원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지켜지고 있지 않나 짐작되는데,⁽⁴⁸⁾ 8시간 노동일의 실효성은 소위 정치교양을 위한 무수한 의무적 집회에⁽⁴⁹⁾ 의하여 완전히 파기되어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시간 노동일은 현재까지 노동자·사무원에 대하여만 보장되고, 전주민의 40%에 해당하는 협동농장원들에 대하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협동농장에 있어서의 8시간노동일의 실시를 경제발전 6개년(1971 ~ 1976)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⁵⁰⁾

북한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는가 여하는 미상이다. 노동자 사무원 1인당 월평균임금은 1970.9.1. 이후 70원이라하는 바, 북한의 1원은 우리나라의 약 119원에 해당한다.

제 3 절 의 무 교 육

소위 북한헌법의 헌법 제 18 조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이다」라고 규정하고⁽⁵²⁾ 이에 따라 1949.9.10의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1950.9.1.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⁵³⁾ 이에 의하면, 인민학교에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빈한한 자녀에게는 교과서·학용품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배급한다는 것이다. (동법령 2조)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에 따라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1967년부터는 「전반적 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⁵⁴⁾ 전반적기술의무교육에 의하여, 8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결국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효성은, 이른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중한 노동압박과 이른바 방위체제의 확립이라는 탈을 쓴 군사훈련의 강화에 비추어 보면, 여러가지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세미만 3세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에서 담당한다. 유치원의 운영은 탁아소의 그것과 유사하다.

제 4 절 주 택 정 책

주택정책이 일반복지향상에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

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경제발전 6개년(1971 ~ 1976) 계획기간안에 도시와 농촌에서 100여만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목표라고 한다.⁽⁵⁵⁾

세대당 주택수의 현황은 미상이나, 도시에 있어서보다 농촌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듯 하다.

제 6 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제 1 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개관

우리 헌법 제 30 조는 제 1 항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활권적기본권을 선언하고, 제 2 항에서 「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게 사회보장증진의무를 지우고, 제 3 항에서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활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이러한 헌법규정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법률 제 1437 호)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 공적부조 」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 2 조), 「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 3 조제 3 항)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정신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여러모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도의 장식화를 피하여 국가 경제적 실정을 참작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실효성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여 나가겠다는데 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법률제 1438 호)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의료보험법(1963.12.16. 법률제 1623 호)에 의

한 의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법(1961.12.30. 법률 제 913호)에 의한 생활보호제도, 일반복지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구호법(1962.3.20. 법률제 1034호)·아동복지법(1961.12.30 법률제 912호)·사회복지사업법(1970.1.1. 법률 제 2191호)·보건소법(1962.9.24. 법률제 1160호)등이 그 중요한 것이다.

한편 특별사회보장제도로써 공무원·군인·선원을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연금법(1962.8.31. 법률제 1133호)·군인연금법(1962.3.21. 법률제 1036호)·선원보험법(1962.1.10. 법률제 964호)이 있고, 군사원호 및 국가유공자원호를 위한 것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1961.11.1. 법률제 758호)·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2.28. 대통령령제 455호)·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16. 법률제 1054호)·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61.7.5. 법률제 650호)·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7.5. 법률제 648호)·군사원호대상자녀교육보호법(1961.11.1. 법률제 759호)·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1962.4.16. 법률제 1053호)등이 있다.

다음에 현행 사회보험제도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료보험제도·생활보호제도를 약술하기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시행령(1969.11.30. 대통령령제 4230호, 1971.11.19. 개정)이 규정하는 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업의 관장

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한다. (동법 제2조)

② 보험가입자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동법 제6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는 (i) 농업·어업·임업 등 (ii) 정치·사회·문화단체의 고유사업 (i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iv) 상용근로자 30인미만의 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8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등이다. (동시행령 제2조)

③ 보험료

보험료는 보건사회부장만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율은 과거 5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수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동법 제19조, 제21조)

④ 보험급여의 내용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제급여 (葬祭給与)·일시급여로 나눌 수 있는 바, (i) 요양급여는 8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요양비의 전액, (ii) 휴양급여는 위 휴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iii)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 (iv)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v) 장제급여 (葬祭給与)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vi) 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써

지급한다. (동법 제9조)

⑤ 보험급여의 청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 및 그 유족이다. (동법 제11조 제12조),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보험가입자 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동법 제14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동법 제11조)

(2) 의료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로 행하여지나, 근로자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및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사망 및 분만의 경우에는 동 제도로 구제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를 위하여 의료보험법 및 동시행령(1969.10.23. 대통령령제 4154호)은 의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① 의료보험의 보험자 및 피보험자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 및 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조직된 법인인 의료보험조합이다. (동법 제12조, 제14조)

사업주는 의료보험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로서의 근로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 근로자는 2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되거나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근로자이다. (동법 제 8 조) .

② 보험료등

국가는 의료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의 전액을 보조하고, 그 보험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동법 제 43 조, 동시행령 제 36 조제 1 항) .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 보험료율은 임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8 이내의 범위안에서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동법 제 44 조, 동시행령 제 37 호) 이 보험료는 피보험자 및 그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반분하여 분담한다 (동법 제 45 조, 동시행령 제 38 조)

③ 보험급여의 내용

의료보험급여는 요양급여·장제급여·분만급여로 나눌 수 있는 바 (1) 요양급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 필요한 요양급여 혹은 이에 갈음하는 치료비를 제공하며, 의료보험기관은 소요된 요양비중에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 28 조~제 32 조, 동시행령 제 27 조), (2) 장제급여는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천원, 그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3천원을 지급하고 (동법 제 30 조, 동시행령 제 28 조), (3)

분만급여는 피보험자가 분만한 경우에는 2천원, 그 배우자가 분만한 경우에는 천 5백원을 지급한다. (동법 제 34조제 1항, 동시행령 제 29조)

(4) 보험의료기관

요양급여를 위한 의료보험기관은 의료기관중에서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동법 제 39조)

(3) 생활보호제도

노령·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1) 보호대상자의 범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임산부·불구·폐질등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동법 제 3조)

(2) 보호기관·보호비용

보호기관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군수이나, 국가도 직접 보호를 행할 수 있다. (동법제 15조)
서울특별시·시장·군수는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내의 요보호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법 제 17조)

보호비용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하며 (동법 제 38조),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동법 제 39 조)

(3) 보호의 내용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상제보호(喪祭保護)로 나눌 수 있는 바, 금전급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법 제 5 조·제 7 조·제 10 조·제 12 조·제 14 조 참조)

(1) 생계보호는 원칙적으로 1 월분이내를 한도로 하여 의복·음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금품을 급부하며 (동법 제 6 조~제 8 조), (i) 의료보호는 일정한 의료조치를 보호기관이 경영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바 (동법 제 9 조·제 10 조), 그 의료의 한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법 제 10 조제 5 항), (ii) 해산보호는 조산과 분만전·후에 필요한 조치의 보호 (동법 제 11 조), (iii) 상제보호는 초상(初喪)과 장례의 조치 (동법 제 13 조)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보호의 신청

요보호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보호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8 조), 보호기관은 지체없이 보호의 여부 및 보호의 종류 및 방법을 결정하여 14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 21 조)

제 2 절 남북한 비교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우선 사회보험제도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업무외의 재해보상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기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의료보험제도는 임의적 설립주의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전면적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 특별사회보험으로서의 공무원 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선원보험제도가 부분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다음 생활보호제도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보호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정을 통하여 그 실효적 운용이 기다려지고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제도는 보건소 및 국립·도립·시립병원의 운영강화를 과제로 하는 반면, 아직 무상치료제의 채택은 제도상 요원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요약하면 전면적인 사회보험제도와 무상치료제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부면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특징을 대비하여 보면 그 비교의 윤곽이 밝혀질 것이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병자한 전체주의 체제의 공고화라는 치명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부면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보존을 위한 수단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불가양의 자유를 구가하면서도 경제건설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보장부면에 대한 투자순위를 뒤로 미루어 온 것이다.

다만 현재의 몇가지 괄목할만한 사회보장부면에 있어서의 성과가 모두 최근 10년 사이에 있어 왔고 지금도 실업보험제도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의 상대적 미비점도 머지않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도면에 있어서의 북한의 몇가지 우점(優點)도 그 시행상의 치명적인 폐단으로 인하여 거의 상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는 근로조건이 이른바 최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 가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은 사상 유례없는 가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즉 제도상의 8시간노동제가 이미 소위 천리마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4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연장되었던 수년간 철저하게 유린되었으며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소위 노동영웅의 칭호를 향한 근로자들의 질타(叱)로 인하여 8시간노동제의 실효성은 본질적으로 회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근로조건하에서의 사회보장의 제도적 완비는 이미 본말을 전도한 하나의 장식으로 귀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질에 있어서 상이한 체제라는 점을 간파하여 그 어느 일부분의 제도로서 양제도를 운위(云謂)하는 경솔의 위험은 이미 주지된 바와 같으며, 한편 전체주의 체제하에서의 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를 망서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단적인 예로서 북한의 사회보장이 그들의 이른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의 노동력 보존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우리의 사회보장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 7 장 결 론

모든 현대국가에 있어서 최상의 명제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가치를 여하히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에 있다. 인간으로서의 생활과 가치는 정신적 자유·정치적 자유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일면으로 하고, 생활권적 기본권 및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적 보장을 타면으로 하여, 양자 모두를 통하여 구체적 현실이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에게 문화생활을 향유케 하기 위한 제도의 중심적 일환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현대에 있어서 실로 체제여하를 초월하는 최대의 과제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이후의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일부가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라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일반적 연구·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 및 실정에 대한 검토·우리의 현 사회보장제도 및 실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반성의 여러 작업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을 신봉하면 할 수록 증대되는 것이니, 자본주의체제가 생산증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종국적으로 능률적인 제도라 하여도, 그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격증, 시장구매력의 격감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완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전제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미비점에 대한 반성을 주축으로 하고, 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상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로 인하여 무색하여지고 있는 실경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하여, 이 땅에 사회보장제도를 위요한 제 사회경제시책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신적 물질적인 문화수준의 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이배올로기로 생각한다.

(주) 해 설

- (1) 健康保險組合聯合會編, 社會保障年鑑 1970, 日本東洋經濟新報社刊
273面 參照
- (2) 우리나라 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164 ~ 234 면
- (3) 김일성의 20개정강은, 1936년 소련헌법의 정치경제제도를 요약한 것으로서 ① 8시간 노동제 ② 소련노동의 금지 ③ 남녀 평등 ④ 전반적 의무교육 ⑤ 자유선거 ⑥ 중소기업의 국유화 ⑦ 일본인 및 매국노의 재산몰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강구진, 북한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통일원, 5면 참조.
- (4) 소위 민주개혁법률로는 ① 1945.3.5의 토지개혁법률 ② 1945.6.24의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③ 1946.8.10의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의 3개가 중요하다. 강구진, 전계서, 15면 참조.
- (5) 전계서, 우리나라 법의 발전, 193면 참조
- (6) 강구진, 전계서 45면 참조.
- (7) 김일성, 우리 당의 사법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김일성 선집 (1960년) 제5권 451 ~ 452면 참조
- (8) 국토통일원, 북괴 경제통계집 (1968) 참조.
- (9) 북한인민의 절반에 가까운 농업협동조합원에 대한 일반적 사회보험에 관하여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길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10) 민주조선, 1970.11.3, 제 265 호 참조.
- (11)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법령연혁집(제1집), 517 면 이하.
- (12) 전계서 532 면에는, 사회보험법 제 95 조부터 제 99 조까지가 누락되어 있어, 양로연 금의 요건으로서의 노동경력연수 및 연령과 양로연 금산정비율은 미상이다.
- (1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66 ~ 1967)
- (14)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1945 ~ 1968) 참조
- (15) 朝日新聞社, 朝日年鑑(1971), 122 面 参照
- (16) 1947.7.10. 병원 암블라토리(의원) 및 물리클리닉(진료소) 규정, 1947.9.8.간이 암블라토리(진료소) 및 간이산원(産院) 규정, 1947.7.14. 디스판셀(보건소) 규정, 1947.6.13. 구급소 규정 등, 전계 북한법령연혁집 427 면~441 면 참조
- (17) 1947.8.29. 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전계서 442 면~448 면 참조.
- (18) 1947.6.20. 치료비규칙, 전계서 460 ~ 461 면 참조
- (19) 1947.3.31. 1947 년도 요양·휴양사업조직에 관한 결정서, 전계서 455 면, 1947.12.19.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상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 전계서 543 ~ 545 면 참조
- (20) 1947.6.13. 탁아소규칙, 전계서 449 ~ 451 면 참조
- (21) 소위 북괴 헌법 제 12 조후단, 전계 515 면 참조
- (22) 동 헌법 제 30 조, 전계서 5 면 참조
- (23) 동 규정 제 1 조, 전계서 427 면 참조

- (24) 동 규정 제 1 조, 전계서 434 면 참조
- (25) 동 규정 제 3 조·제 5 조, 전계서 437 면 참조
- (26) 전계 헌법 제 6 조·제 19 조, 전계서 3 면·5 면 참조
- (27) 국토통일원, 북괴 경제통계집 (1968) 참조
- (2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5) 참조
- (29) 국토통일원, 북괴 경제통계집 (1968) 참조
- (30) WHO, World Health Statistic Annual, 1965, Vol. III.
(前掲 社会保障年鑑 (1970) 463 면에서 重引)
- (3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 5 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민주조선, 1970.11.3. 제 265 호 참조
- (32) 김일, 인민경제발전 6 개년 (1971 ~ 1976) 계획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0.11.10. 제 314 호, 6 면 참조
- (33) 동 규칙, 전계서 460 ~ 461 면 참조
- (34) 북괴의 사회보험법 제 107 조 전계서 534 면 참조
- (35)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 ~ 1967) 계획에 대하여, 1967.9.16.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보고,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81 면 이하
- (36) 1947.12.19.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상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개편에 관한 결정서, 전계 북한법령연혁집 543 면 참조
- (37) 국토통일원, 북괴 경제통계집 (1968) 참조
- (38) 전계 김일, 인민경제발전 7 개년 계획에 대하여 및 전계 로동신문 참조.

- (39) 국토통일원, 북괴경제통계집 (1968) 참조
- (40) 전제 탁아소 규칙 제 13조, 전제서, 450면 참조
- (41)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1946 ~ 1948) 참조
- (42) 전제 민주조선에 게재된 김일성의 총화보고에 의하면, 탁아소·유치원의 설비확충을 통하여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다 탁아소·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바, 적어도 1970년 현재까지 탁아소비용은 아직 유상이 아닌가 짐작된다.
- (43) 전제 북한법령연혁집 513 ~ 516면 참조
- (44) 소위 북괴헌법 제 15조, 전제서, 3 ~ 13면 참조
- (45) 동 헌법 제 16조, 전제서 3 ~ 13면 참조
- (46) 강구진, 전제서, 54면 참조
- (47) 이동준, 환상과 현실, 나의 공산주의관 서울 동양통신사, 1961. 187면 참조
- (48) 김일은 노동당 제 5차 당대회보고에서, 기술준비·작업조건을 충분히 지어 줌으로써 노력낭비를 없애어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여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제 노동신문 참조
- (49) 김일성은, 노동당 제 5차 당대회총화보고에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의 공고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전제 민주조선 참조
- (50) 김일성, 노동당 제 5차 당대회 총화보고, 전제 민주조선 참조
- (61) 前掲 朝日年鑑 122面 参照
- (52) 전제 북한법령연혁집 3 ~ 13면 참조

(53) 전계서 498면 참조

(54) 김일성, 노동당 제5차당대회총화보고, 전계 민주조선 참조

(55) 김일, 노동당 제5차 당대회 보고, 전계 로동신문 참조